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등의
공소시효 폐지 〉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2208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2
IV. 검토의견	3
1.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등의 공소시효 폐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24.
3. 회 부 일 : 2024.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4항제3호).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등의 공소시효 폐지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¹⁾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및 제9조제1항의---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공소시효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영향력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그 범죄에 관한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소시효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²⁾.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나 사회구성원의 처벌감정이 누그러지지 않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범죄 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도 증거수집이 가능한 방법이 개발되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 규정이 도입되고 있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20조에서는 강간등 살인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이나 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등에 대하

2)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로, “오랜 동안 형사상의 소추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소추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것에 다름 아닌데도 그 불이익을 오로지 범인만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유죄의 증거이든 무죄의 증거이든 오랜 기간의 경과로 증거가 산일(散逸)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범죄의 사회적 영향력이 미약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범인의 범행에 대한 후회나 처벌에 대한 불안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범인이 처벌을 받은 것과 비슷한 상태가 계속되어 형벌이 기대하는 범인의 인격의 변화가 기대될 수 있음에 반하여,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형벌이 기대하는 범인에 대한 형벌의 감화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오래 전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의 필요를 면제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헌재 1995. 1. 20. 94헌마246 참조)

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상 공소시효 적용 제외 대상범죄 >

근거 법률 규정		대 상 범 죄	
제20조	제3항제1호	13세 미만의 사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형법」 상 강간(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301조의2),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5조)
	제3항제2호		「청소년 보호법」 상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제3항제3호		「성폭력처벌법」 상 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제6조제2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 및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제7조제2항 및 제5항),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제4항제1호	「형법」 상 강간살인(제301조의2)	
	제4항제2호	「청소년보호법」 상 강간등 살인(제10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제11조제1항)	
	제4항제3호	「성폭력처벌법」 상 강간살인(제9조제1항)	

현행법상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9세 미만이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 아동·청소년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됨.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성인인 때부터 진행되고³⁾, 친족관계의 강간 등의 범죄는 「형사소송법」 상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⁴⁾되는데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됨⁵⁾.

개정안은 친족관계(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라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효과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의 아동·청소년(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대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어떠한 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인지는 범죄의 실태, 국민의 가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4)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치관과 법감정, 법적 안정성과 범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형사사법 체계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⁶⁾임.

친족 성폭력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노출되어 가해자에게 저항하기 어렵고 가해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신고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거나 공론화하지 않아 외부에서 알아차리기 쉽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범죄와 연관된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개정안은 이러한 친족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행한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단순히 친족관계만 존재할 뿐 친족관계가 형사소추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친족관계의 존부라는 점만 고려하여 공소시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에 맞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종합하면,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등의 공소시효 적

6) 현재 1995.7.21.선고 95헌마8 참조.

용을 배제할지 여부는 친족 성범죄의 특수성, 기존 공소시효 배제 범죄와의 가벌성 비교, 공소시효가 배제되지 않는 범죄와의 형평성, 사회의 처벌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개정안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2건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87호),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97호)]」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법률안들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친족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에 기반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공소시효의 취지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신중검토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